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 대 전 고 등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17누100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구합63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27.

판 결 선 고 2017. 5. 18.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1,840,030원의,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8,173,690원의, 선정자 C에 대하여 한 2,960,280원[1]의, 선정자 D에 대하여 한 2,960,280원의, 선정자 E에 대하여 한

1)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2,960,100원은 2,960,280원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2,579,580원의 각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B, C, D, E은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피청구인을 '[redacted]시장'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위 선정자들이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제1심이 '[redacted]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의 송달일자를 기준으로 각하판결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갑 제5, 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위 선정자들이 피고를 처분청으로 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5. 11. 26.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문에는 처분청이 "[redacted]남도 [redacted]시장([redacted]구청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결정 내용에도 피고가 처분청으로서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내용이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피청구인이 피고임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결정문에도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오명희

판사 박우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 선 정 자 목 록

1. A

2. B

3. C

4. D

5. E 끝.